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은진의원 발의)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이은진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1. 9. 5.
-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10.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은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신청절차와 대리수령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동의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하부 규칙으로 지원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10.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건축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정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지하차도 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 2)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동의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용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10.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첨단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음
- 경기도는 대책으로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용자(시 출연금) 및 이차지원(도비, 시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자(10년이상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1인당 용자공급액(80,000천원)의 10%(8,000천원)를 해당 시군에서 출연하고 이차에 대해서는 용자금액의 연리 1.5%(5년간)를 부담해야 하는 바,
- 우리시는 2022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용자지원 사업 신청자 2명에 대한 용자공급액(160,000천원)의 10%인 16,000천원을 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2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용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개요
 -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후출연(시→재단)

- 사업대상 선정 후 대출규모를 확정하여 2023년 시 예산반영
- ▶ 개인택시면허 실거래가 수준의 보증 및 저리융자 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 재단보증금 : 출연금의 10배
- 재단보증률 : 100%
- ▶ 개인택시사업자 실소득을 고려한 대출기간(2년거치, 6년상환) 적용(협력은행)
- ▶ 대출기간(2년거치, 6년상환) 중 대출일로부터 5년간 이차보전 1.5% 지원(道, 시)
- ▶ 대출상환 완료시점까지 면허양도 제한(시)
- ▶ 원금상환 및 이자 청구를 위한 정산체계 협의 구축(협력은행, 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동의 전문위원)

- 가.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 공급액의 10%를 후(後) 출연 하는 내용으로,
- 나.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호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4. 유재호 의원 외 5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10.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유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화성도시공사의 수탁 업무를 규정한 제19조제2항 각 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안 제19조제2항제19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동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나. 주요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수탁 업무를 규정한 제19조제2항에 각 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10.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정책기획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내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화성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일원
- 3) 면 적 : 298,267㎡ (약 9만평)
- 4) 사 업 비 : 1,566억원
- 5)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6) 사업방식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7)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100%(개발제한구역 99.9%)

○ 주체별 업무추진내용

- 1) 사업승인권자 : 경 기 도

2) 사업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 재원조달계획

구 분	금 액(억 원)	비 고
합 계	1,566	
자체사업비 + 공사채	989	
분양수입	577	총 분양수입 : 1,648억 원

○ 공사채 발행계획

구 분	금 액(억 원)	비 고
순자산규모(A)	1,664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기준
공사채 발행한도	3,328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승인 후 부채 총계(B)	1,351	-
기존부채총계	362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기준
신규 승인 신청액	989	당해 사업 관련 공사채 신규 발행 금액
순자산 대비(B/A)	0.81배	한도 이내임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 ‘보통’

1) 실수요자에게 자가점유확대 기회를 증진시키는 분양주택용지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용지로 구성된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며, 해당 용지들의 공급은 화성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소유의 편중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2) 재무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37억원	(FNPV > 0) → 타당성 확보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	7.38%	(FIRR > 4.5%) → 타당성 확보
수익성지수 (PI)	1.03	(PI > 1) → 타당성 확보

※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2021.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동의 전문위원)

- 가.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나.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내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